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5선거구 윤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  
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본 의원이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  
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입니다.

특수의료장비는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 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가능합니다.

공동활용병상은 병상이 적은 소규모 병원들도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특수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유연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물밑에서는 공동활용병상을 고가에 매매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악용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장비설치가 가능하여 다른 전문의들보다 개원의 장벽이 높은 현실입니다.

또한 저의 지역구인 노원구의 일례로 기존 장비를 최신장비

로 교체하려고 장비를 계약하였으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한 장비를 동물병원에 이양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최신장비로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환자들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람이 동물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어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어렵게 하여 의원급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어렵게 하여 최신장비로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